•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Better life Yeonsu

연수구보

■구정방향■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645호 2011. 8. 8.(월)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615호(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회람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 - 61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08월 0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해촉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3조 내지 제4조)

○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서식을 정하고, 회의소집 및 회의출석, 회의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5조 내지 제8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9조 내지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032-810-7466, www.yeonsu.go.kr/(참조:도시계획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도시계획관련분야"라 함은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분야를 말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토지이용·교통·환경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5.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6. 기타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연수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시에는 제1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상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소집)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의출석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8조(회의진행 등) ① 부의안건은 관련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참고인” 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참고인의 위원회의 참석여부는 위원

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4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및 결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②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징구된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위원회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부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자　택)

사무실)

소속 및 직위 :

전공분야 및 취득학위 :

연　락　처 : 자　택)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F A X)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을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
○ ○ ○

귀하를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 ○

[별지 제3호 서식]

심의(자문·보고) 안건	
의 안 번 호	제 호
심 의 일 자	0000. 00. 00.

심 의 (자 문 · 보 고) 안 건 명

제 출 자	연수구청장
제출년월일	0000. 00. 00.

심 의 (자 문 ·보 고) 안 건 명

1. 제안이유

○ 내용 서술

2. 주요내용

○ 내용 서술

3. 추진경위

○ 0000. 00. 00 :

○ 0000. 00. 00 :

4. 심의자료

○ 관련법령, 도면 등 첨부 또는 설명

5. 참고사항, 민원사항 등

○ 내용 서술

6. 의견청취

○ 열람 및 공고

- 열람·공고 기간

○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

- 주민의견
- 관계기관(부서) 의견
- 제시의견 및 검토내용(반영여부 포함) : 가능한 표로 작성

7. 의결주문(의결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00)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안건 심의에 필요한 도면(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등 각종 도면), 현장사진, 편입토지조서등 보조자료 빠짐 없이 수록 요(아래한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등록부

0000. 00. 00 (일)

연번	성 명	확 인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내용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지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위원으로 재임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 원 ○ ○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검토의견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